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1481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11.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0,600,14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00,1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0295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3,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021. 5.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10,600,147원이다.

나. D의 부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11. 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D, C, F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11. 2.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과 피고의 관계 및 D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23,1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2020. 12. 14.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72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3,100,000원(실제 피담보채권액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인 사실,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1. 5.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10,600,14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의 가액은 154,866,666원[= (720,000,000 - 23,100,000) × 2/9,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0,600,147원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는 둘 중 더 적은 10,600,147원이 된다.

라. 소결

이 사건 분할협의 중 D의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0,600,14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0,600,1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판사 경정원

별지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구로구 H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동

1층 722.90㎡, 2층 714.07㎡

3층 714.08㎡, 3층 714.07㎡

5층 714.08㎡, 6층 714.07㎡

7층 714.08㎡, 8층 714.07㎡

9층 714.08㎡, 10층 714.07㎡

11층 714.08㎡, 12층 714.07㎡

13층 714.08㎡, 14층 714.07㎡

15층 714.08㎡, 지층 615.8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구로구 J 대 20088.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K호 철근콘크리트조 84.57㎡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0088.4분의 42.51 .끝.

